

구미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의안 번호	
----------	--

제안일자	2003. 6. 21.
제안자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1. 수정이유

- 회계연도 마다 수립하는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기금운용의 심도있는 계획과 투명성을 제고
- 또한, 여성발전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종전 조례로 위촉된 위원은 해촉하고 새로 제정된 조례로 위원을 위촉 하도록 수정

2. 수정 주요골자

- 회계연도 마다 수립하는 기금운용계획안의 의회 제출(안 제33조③항 추가)
- 종전 위원회 위원은 해촉하고 새로 제정하는 조례로 위원을 위촉 (부칙안 제3조①항 삭제)

3. 수정 주요내용

- 안 제33조(기금운용계획) 중 ‘제1항에 의하여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③항 추가
- 부칙안 제3조(경과조치) 중 제1항의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구미시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구미시여성발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의 제①항을 삭제

구미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구미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발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기타 여성관계 법령에 따라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의 여성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의 책무) 시는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법 및 기타 여성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2장 여성시책

제3조(여성시책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여성정책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책의 분석, 평가 등) 시장은 소관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당해 시책이 여성의 권익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야 하며, 필요시 관계기관에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5조(여성관련 통계 및 조사) ①시장은 효율적인 여성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기초조사 및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시장은 시와 소속기관에서 생산, 보급하는 각종 통계 및 자료 등에 성별 분리된 자료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여성관련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시민에게 최신의 정보가 제공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여성주간행사) 시장은 법 제14조 및 여성발전기본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여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행사를 개최하거나 행사주관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유공자 표창 등) 시장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한 여성발전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게 구미시포상조례에 의거 표창할 수 있다.

제8조(시정참여의 확대) ①시장은 여성의 시정참여확대를 위하여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시책결정을 위한 각종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 위촉직 위원
의 여성참여 목표율을 지정,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공직참여의 촉진) 시장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채용, 보직
관리, 승진, 포상, 교육훈련 등의 합리적 운영으로 여성의 공직참여확대를 위
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10조(양성평등의식의 제고) 시장은 가정·학교·직장·사회교육기관 등에서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련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성폭력 및 가정폭력 등 예방) ①시장은 성폭력 및 가정폭력의 예방과 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직장내 성차별 및 성희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년 1회 이상의
교육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관련 사례에 대한 각종 고충과 애로사항
을 상담하고 해결하기 위한 전담창구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여성의 복지증진) ①시장은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복지 수요에 부
응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저소득모자가정·미혼모·가출여성 및 요보호여성의 발생을 예방하
고, 이들에 대한 선도·보호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야 한다.

③시장은 여성근로자, 여성노인 및 농촌여성의 복지증진과 여성장애인의 재활
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3조(모성보호의 강화) ①시장은 임신·출산 및 수유기간 동안에 여성이 특별
히 보호되도록 노력하고, 이를 이유로 하여 여성이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보육의 질적수준 향상, 보육시설의 확충, 방과후 아동보육 활성화 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관련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경제활동의 지원) ①시장은 여성의 취업·창업·기업활동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함에 있어 여성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

제15조(단체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32조에 의거 여성의 사회참여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법 제3조제2호 및 영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하며, 전국단위의 단체일 경우에는 시지부 또는 지회 등에 한한다)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여성관련시설의 설치·운영) 시장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의 복지증진과 능력개발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7조(자원봉사활동의 지원) 시장은 여성의 자원봉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국제협력의 지원) 시장은 국제기구와 국제회의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고, 여성의 국제협력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3장 여성발전위원회

제19조(설치)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확대, 복지증진 등 여성시책의 수립 및 시행과 관련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구미시여성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 및 자문한다.

- 1.여성정책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 2.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확대에 관한 사항
- 3.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 4.여성단체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 5.기금의 조성 및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
- 6.여성관련 각종 정보의 수집, 제공에 관한 사항
- 7.기타 여성정책 관련 주요사항

제21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인, 여성단체협의회장, 여성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 1.여성관련 기관, 단체 활동 경력 및 여성정책개발 능력이 있는 자
- 2.여성관련분야 각계각층 직능대표
- 3.여성분야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담당과장, 서기는 소관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22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4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②정기회의는 년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 등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본과위원회)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본과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26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1.위원이 임기중 사임하였을 때
- 2.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 3.위원이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28조(실비변상) 관계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세부사항)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여성발전기금

제30조(기금의 설치 등) ①시장은 여성발전의 기반조성과 여성의 능력개발, 사회 참여확대 및 복지증진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미시여성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②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1.구미시 출연금
- 2.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 3.기타 수입금

제31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 1.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
- 2.건강한 여성단체의 지원
- 3.여성의 사회활동 참여의 지원
- 4.여성의 능력개발을 위한 사회교육지원
- 5.여성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지원
- 6.여성의 국제협력사업의 지원
- 7.기타 여성의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제32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 ②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③기금은 당해연도 기금의 이자발생 수익금의 범위안에서 운용하여야 한다.
- ④당해년도 결산 잉여금은 전액 재적립하여야 한다.

제33조(기금운용계획) ①시장은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 2.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 3.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 4.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회계공무원) ①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 1.기금운용관 : 소관업무담당과장
- 2.기금출납원 : 소관업무담당주사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35조(기금의 결산) ①시장은 매 회계년도마다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 보고서는 다음 회계년도 6월말일까지 의회

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관계규정의 준용)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출납·보관의 절차와 공유재산·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구미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5장 보 칙

제37조 (사무의 위탁) ①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는 사무의 종류·범위, 위탁의 방법·절차 등에 대하여는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구미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구미시여성발전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것으로 본다.

수 정 안 대 비 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33조(기금운용계획) ①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u><신설></u>	① (제정안 제1항과 같음) ② (제정안 제2항과 같음) ③ <u>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 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u>
부 칙 제3조 (경과조치) ①<u>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구미시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u>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u>구미시여성발전위원회</u>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②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구미시여성발전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것으로 본다	<u>(삭제)</u> (제정안 2항과 같음)